제6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의 안 번 호	2879

제출일자 : 2026. 9. 28.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주문

지역의 사회보장 여건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반영하여 수립한 제6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3. 주요내용

가. 계획기간 : 2027년 ~ 2030년(4년간)

나. 주요내용

- **목표 : 모두가 행복한 복지, 미래를 여는 최고 달성**
- 구성체계 : 2개 분야, 10대 추진전략, 35개 세부사업, 30개 세부과업

지역사회보장 사업 전략체계 (세부사업 35개)	**전략1.** 아이와 청소년이 성장하는 미래환경 조성
	전략2. 청년과 일자리가 모이는 자립도시 조성
	전략3. 건강과 통합돌봄이 보장되는 행복도시 조성
	전략4. 모두를 위한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
	전략5. 함께 만들고 모두가 누리는 복지공동체 실현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세부과업 30개)	**전략1.**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전략2. 담당인력 역량강화
	전략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전략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전략5.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기반강화

- 중점추진사업 : 10개 사업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의 결과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2., 2017. 9. 19., 2022. 1. 25.>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의회에 대한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확정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각각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이하 "시·도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해당 시·도 의회에 대한 보고를 거쳐 확정된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1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